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송금, 원격지수표,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1. 외화송금
2. 원격지수표
3. 외국통화 매입
4.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실명거래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조 외화송금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신청서 사본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판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⑤ 지급 통화가 수취인 국가의 통화가 아닐 경우, 지급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은행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수취인 국가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원격지수표

① 신청인이 외화수표의 발행 및 배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수표를 원격지수표라 명명합니다.

② 원격지수표 발행 신청 시, 은행은 “발행 및 배송 담당 제휴 금융기관”(이하 “제휴 금융기관”이라 합니다)에 수표 발행 신청 및 배송 내용을 전달하여 최종 수취인에게 수표가 배송되도록 합니다.

③ 은행은 제휴 금융기관에 수표발행 통지, 수표발행 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은 수표발행 거래를 마친 때 수표 발행신청서 사본 등으로 발행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인의 발행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원격지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제휴 금융기관에 수표지급정지 요청 후,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제휴 금융기관의 수표지급 정지 수수료 등 발행취소에 소요된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⑤ 원격지수표의 지급자금이 제휴 금융기관에 제공된 경우 은행은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제휴 금융기관에 원격지수표의 액면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⑥ 발행 통화가 수취인 국가의 통화가 아닐 경우, 지급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은행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수취인 국가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외국통화 매입

①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 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 시 제출한 “외국환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의 외화여신 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 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추심

①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외화수표 등의 기재금액

해당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금액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3. 기타 부대비용

②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추심)신청 시 제출한 외화수표 등 또는 “외국환매입(추심)신청서”에 근거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며 은행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⑤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①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 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③ 은행은 제②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9조 약관의 변경 사항을

준용합니다.

④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